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 출 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98. 4. 16

나. 회부일자 : '98. 4. 16

3. 제안이유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유통단지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여 도의 유통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북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4. 주요골자

- 충청북도유통단지심의위원회의 운영목적을 명시함
(안제1조)
-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구성과 위원의 위촉, 해촉, 임기등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
(안제2조)

- 위원회의 기능으로 유통단지개발계획의 수립, 유통단지의 지정, 유통단지개발 등에 대한 각종지원, 기타 유통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안제3조)
- 위원회의 총괄과 운영을 위해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제4조)
- 회의의 소집, 의결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5조)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도록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도록 함 (안 제6·8조)
-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단체로부터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7조)
-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 예산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함
(안 제10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함 (부칙)

5. 검토의견

충청북도 유통단지 심의위원회조례(안)을 검토한 바

이는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3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유통단지에 관하여 지사의 자문에 응하고 유통단지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유통단지개발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 제2조)

둘째,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유통단지개발계획의 수립·지정
및 유통단지개발 등에 대한 각종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안 제3조)

셋째,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단
체로부터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있도록 하는 등
(안 제7조)

기타 본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
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